10월항쟁 **80주년** 국회토론회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2026년 **10월 6일(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당일 11:20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공동주최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임미애**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목차

5 • 축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15 • 발제

❶ 1946년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80주년의 과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❷ 10월항쟁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과제
김산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

❸ 10월 항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김창록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축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축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1946년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남겨진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종오, 임미애, 차규근 의원님과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80년 전 가을, 대구의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원한 것은 먹고살 권리와 사람답게 대우받을 권리였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해방된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민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가 공권력의 가혹한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 마저 한국전쟁 전후로 다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폭도의 가족'이라는 모진 낙인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그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어딘가에 묻혀 있

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 역시 제도적 근거 없이 멈춰 서 있습니다.

제주4·3과 여순사건이 그러했듯, 10월항쟁에도 국가의 약속을 법으로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온전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유해발굴, 배·보상, 나아가 역사교육과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실 소중한 논의가 10월항쟁 특별법 제정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보태겠습니다.

10월항쟁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차규근입니다.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남은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자리를 준비해 주신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와 이학영·윤종오 의원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진실규명에 힘써 오신 유족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된 분들을 추모합니다.

1946년 대구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고, 식량난을 겪던 시민들은 쌀을 요구했습니다. 미군정의 정책과 파업 진압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일어난 항쟁은 경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항쟁 과정에는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진압과 이후의 관련자 색출 과정에서는 민간인들이 재판 등 적법절차 없이 희생됐습니다.

그 진실의 일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가기관의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대구·칠곡·영천·경주 일부 지역을 조사해 희생자 60명을 추산했고,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령사업과 공적 기록 정정, 역사교육 등도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조사가 닿지 못한 지역과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희생에 대해서도 유족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권고가 지속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밝혀진 진실에 책임지는 일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남은 피해를 조사할 기회를 살리는 동시에, 유해발굴과 배·보상, 역사교육과 기념사업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해야 합니다.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입법 경험을 살펴 10월항쟁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내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의 책임을 짚고, 특별법에 담을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합니다. 유족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저도 오늘 제기되는 의견을 듣고, 10월항쟁의 진실규명과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80년 동안 남아 있던 과제를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오늘「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월항쟁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오신 10월항쟁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6년은 10월항쟁이 일어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10월항쟁 진압 과정에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온 유족들이 또다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도록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풀어드리지 못한 현실에 국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의 논의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로 이어지고, 10월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10월항쟁 80주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에 마음을 모아 함께합니다.

먼저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긴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첫 민중항쟁이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량난과 강제공출은 계속됐고, 친일 관료와 경찰은 다시 권력의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학생과 시민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10월항쟁은 대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북과 부산·경남, 전라, 강원, 충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중이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로 나섰던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항쟁을 오랫동안 왜곡하고 지웠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

다. 80년이 흘렀지만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명예회복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해발굴, 배·보상, 역사교육과 기념사업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0월항쟁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던 민중의 역사입니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진보당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10월항쟁의 정신을 오늘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발제

❶ **1946년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80주년의 과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❷ **10월항쟁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과제**
김산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

❸ **10월 항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김창록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

1946년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80주년의 과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1946년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80주년의 과제

김상숙(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며

1946년 10월항쟁은 흔히 10·1사건, 또는 대구항쟁 등으로 이야기되듯 1946년 10월 1일에 대구에서 발생한 시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된 특정한 사건이 아니다. 또한 그 이후 일어난 민간인학살 사건은 단순히 '좌우세력 간의 대립과 상호보복' 또는 '민간인 봉기와 이에 따른 경찰과의 충돌'의 성격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전쟁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등 각종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1946년 10월항쟁은 그동안 바라보는 쪽의 관점에 따라 '대구 10 · 1 폭동', '10 · 1 사건', '10 · 1 소요', '10월 인민항쟁', '추수 봉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특히 '좌익 주도의 폭동'이라는 시각 때문에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대구10월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공식 조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

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어난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글에서는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항쟁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항쟁 진압 과정에서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발생한 민간인학살을 살펴보고 앞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할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1946년 10월항쟁 이전 대구·경북 지역의 건국운동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전국 각지에 건국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 대구에서는 좌우합작 단체인 건국준비 경상북도 치안유지회가 만들어져 활동했다. 10월에 미군이 들어와 이 단체가 해산된 후에는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와 대구시 인민위원회가 민중 자치기구로 활동했다. 1946년 1월부터 민주주의민족전선 대구시위원회(이하 대구민전)가 중심이 되어 미소 공동위원회 지지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펼쳤다. 진보적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이 단체는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존속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를 주최하여 대중 정치 공간을 열었다. 정당 조직을 살펴보면, 해방 후 대구에도 여러 정당이 만들어졌으나 가장 먼저 결성된 조선공산당 경북위원회와 대구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일제강점기에 신간회 활동과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개적 대중조직이 아닌 비공개 전위조직으로서 노동조합 등 각 부문에서 대중조직을 만들고 지도했다. 뒤이어 여운형 계열의 조선인민당 대구지부가 창당되어 학생 조직화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다양한 대중조직이 결성되었다. 노동운동은 산업별로 노조를 만들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산하 조직인 조선노동조합 대구지방평의회를 결성했다. 학생운동은 대구의 과대학 등 대학생 조직의 지도로 중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당시 학생들은 공개적인 연합조직은 없었지만 각 학교의 학생자치회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중조직이 결성되었다. 경북에는 군 인민위원회가 도 전역에 조직되었다. 인민위원회 역시 일제하 신간회 운동과 적색 농민조합 운동을 했던 항일운동 세력이 주축이었다.

농촌 조직들은 도시와 달리 이념적인 기반보다는 지역 유지와 마을 지식인들이 친족공동체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진보세력의 힘이 강했던 이유는 우선, 대중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은 친일 경력을 가진 인사가 많았으나, 진보세력은 항일운동 경력을 가진 인사가 많았으므로 대중은 이들을 지지함으로써 건국운동 의지와 사회 참여 열기를 표현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적 신분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진보세력을 지지했다. 또한, 대구의 진보세력은 분파 갈등이 거의 없었고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 사이의 갈등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보수세력과도 노선 차이를 앞세우기보다는 항일운동을 함께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협의했고 몇 차례 좌우합작을 실현했다. 대구의 진보세력은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생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대중조직을 이끌어나갈 훈련된 활동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방유지 출신의 지식인·엘리트들이 모인 정당으로서 계급적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당시 지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은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민전도 미군정기에 대구 지역의 대표적 통일전선 조직이었으나, 지방 명망가 중심의 상층 통일전선 단위로서 기층 민중의 움직임과 거리가 있었다. 셋째, 당시 진보세력은 미소 공동위원회 성사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미군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협조 노선을 취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넷째, 각 시·군별 조직은 서로 유기적이지 못했다.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관계도 그러했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도 그러했다.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1946년 10월항쟁이 일어났을 때 항쟁이 지역마다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 직후 고조되었던 건국운동의 열기는 미군정이 들어서자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었다. 첫째, 미군정의 비호 아래 친일 관리와 친일 경찰이 재임용되고 보수세력이 육성되었다. 둘째, 해방 후 귀환 이재민이 다수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에 물가고와 실업난에 더해 식량난이 가중되어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했다. 특히 1946년 여름에는 콜레라가 유행하고 수해가 일어나서 도시 빈민의 식량난은 더 심해졌다. 셋째, 토지개혁을 지

연하면서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지 않아 지주 - 소작 관계로 고통받던 농민의 삶도 여전히 힘들었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민중에게는 일제 식민지의 트라우마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봄부터 경북 지역 각 군의 인민위원회를 탄압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식량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의 이반이 심했으므로 6월에 좌우합작 기구인 대구공동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중을 설득하려고 했다. 대구의 진보세력은 미군정과 식량 문제 등을 협상하기 위해 대구공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대구공동위원회는 군정에 건의하고 협조하는 민간 자문기구 수준에 그쳤고, 때로는 미조직 대중운동을 진압하는 역할까지 하며 미군정의 민심 무마용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1946년으로 넘어가면서 각계에서 대중투쟁이 터져 나왔다. 지역에서 터져 나온 여러 계층·계급의 대중투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의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벌이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조직대중은 민전 주도의 대규모 시민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 청년들은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시민 집회나 시위의 사수대와 선봉대 역할을 했다. 둘째, 도시의 미조직된 빈민들은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기아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세 번째,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친일 관리를 공격하고 지서를 습격하는 한편, 공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소작쟁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미군정과 당국에 저항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에는 해방 후 1년 동안 여러 계층·계급 대중의 사회운동 경험이 정치적 행동 패턴으로 축적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조직 대중과 미조직 대중의 활동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자는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이고 계몽적인 유형이라면, 후자는 자연발생적이고 테러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 후에 일어난 10월항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군정의 정책에 반발하는 대중투쟁이 계속 일어나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군정은 민중의 투쟁을 진보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며 대구의 진보세력을 탄압했다. 건국운동의 좌절에 대한 저항은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으로 폭발했다.

3. 1946년 10월 1일~2일 대구의 10월항쟁

1946년 10월항쟁은 일제강점기 전부터 민중 사이에 쌓여 있던 반제·반봉건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파 등용, 잘못된 식량정책과 민생정책, 토지개혁 지연, 진보세력 탄압 등의 정책을 펼치자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중 1946년 10월 1일과 2일에 일어난 대구 항쟁은 참여주체의 면에서 보면, 특정 계층·계급의 항쟁이 아니라 노동자, 학생, 청년, 시민, 공무원, 의사, 일부 경찰까지 참여한 전체 민중의 항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항쟁은 해방 후 1년 동안 진행된 각 부문 대중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1946년 초부터 여러 차례 '기아 시위'를 벌였던 도시 빈민들은 10월 1일 오전과 10월 2일 오전에도 시위를 벌였다. 조직적으로 파업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10월 1일 오후와 10월 2일 오전 대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1946년 한 해 동안 대구민전 주도로 여러 차례 열렸던 대규모 시민 집회와 시위에서 선도 세력이 되었던 학생과 청년들은 10월 2일 오전 대구경찰서 앞 연합 시위의 주축이 되었다. 이처럼 대구에는 해방 후 1년 동안 여러 계층·계급의 반복된 사회운동 경험이 정치적 행동 패턴으로 축적되어 있었고, 대구의 진보세력은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10월항쟁을 통해 집결된 투쟁 역량으로 보여주었다.

당시 노동자 파업이 전국에서 진행되었으나 대구에서만 노동자 파업이 시민 항쟁으로 전환했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실업난과 식량난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했던 탓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의 건국운동 과정에 노동자와 시민이 계속 연대해왔고 총파업 기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1946년 10월 1일 오후 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시민대회는 노동자의 파업이 시민 연대로 확산하는 결정적인 장이었으며 해방 후 1년간 누적된 대중투쟁 역량이 지역 중심부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국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경찰 발포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집회 후 경찰의 발포로 철도노조원 김용태가 현장에서 사망하자 조선공산당 대구시당과 민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위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조선공산당 대구시당 청년부와

학생부 활동가들이 사망한 노동자 김용태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뒤, 각 학교 학생회와 청년조직을 동원하여 10월 2일 대구경찰서 앞의 학생·청년 연합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시위가 신속하게 조직된 까닭은, 대구 지역의 학생들은 해방 직후부터 조선공산당 학생부를 중심으로 연합 시위를 여러 차례 조직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에는 대학과 중학교 대부분이 대봉동을 중심으로 중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보 10~20분 거리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학교 간 연대가 활발했다. 그리고 대구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학생부의 세포조직 또는 공청 세포조직이 있었고, 이 조직은 각 학교 학생자치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10월 2일 오전 대구경찰서 앞 시위에서는 학생·청년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10대 중학생들이 조직적이고 선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노동자 파업이 시민 항쟁으로 전환했다. 그들은 경찰의 무장해제를 끌어냄으로써, 경찰과 시민의 세력관계에서 시민이 우세한 상태를 만들며 항쟁의 전환점을 열었다. 그러나 10월 2일 대구경찰서 앞 연합 시위대의 목표는 미군과 경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군에 경찰 발포 중지를 요구하고 파업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수준이었다.

대구경찰서 점령 소식이 퍼지자 10월 2일 오후 1시 이후에는 대구 시내 곳곳에서 빈민 등 기층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는 전반적으로 경찰과 관리를 살해하거나 친일 우익 인사의 사택을 공격하고 재산을 빼앗는 형태로 일어났다. 오전의 시위가 학생·청년 등 조직 대중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오후의 봉기는 조직대중의 시위에서 주변부 역할을 했던 빈민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대중의 운동이었다. 기층 민중 봉기는 운동 목표나 운동 방식 면에서 학생·청년들의 시위와 차이가 있다. 전자가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이고 계몽적인 유형이라면, 후자는 자연발생적이고 테러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층 민중의 봉기는 ① 지도부 없는 봉기, ② 사회적 트라우마의 폭발, ③ 테러적 유형의 자생적 패턴에 의한 민중의 권력의지 표출이라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 뒤에 전개된 경북의 농민 항쟁 양상과 비슷한 면도 있었다.

대구 항쟁이 전개될 때 전국적인 단위의 항쟁 지도부가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차원에서도 노동자 총파업을 지도한 파업 지도부나 10월 2일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시위 지도부 외에는 대중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항쟁 지도부가 구성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지역 진보세력 지도부 인사로 구성된 조선공산당·민전의 대책위원회는 미군정과의 협상 창구나 사태 수습 기구 역할을 했을 뿐, 광범위한 대중의 항쟁을 지휘할 수 있었던 항쟁 지휘부는 아니었다. 이것은 10월항쟁 전에 전개되었던 지역 사회운동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10월 2일 오후부터 지도부 없이 진행된 항쟁은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몇 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대구 항쟁은 그 뒤 두 달 동안 계속된 전국 항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4. 1946년 10월 2일~6일, 경북의 10월항쟁

1946년 10월 2일 저녁, 대구 항쟁이 진압되자 시위 군중은 경북의 여러 군으로 진출했다. 경북 22개 군에서 일어난 항쟁은 10월 6일경에 대부분 진압되었다. 그러나 항쟁은 제2의 3 · 1운동처럼 전국으로 번져 73개 시·군에서 12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경북 항쟁은 지역마다 항쟁 규모와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항쟁 주도층 대 경찰의 세력관계라는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① 공격형 권력 장악 지역, ② 협상형 권력 장악 지역, ③ 권력 미장악 교전 지역, ④ 산발적 항쟁 발생 지역, ⑤ 협상에 의한 항쟁 제어 지역 등 크게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해보았다.

그리고 영천의 항쟁을 사례로 경북 농민 항쟁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영천 항쟁의 경우, 첫째, 항쟁 주도층의 구성을 보면, 당시 경북 농촌 지역에는 군 인민위원회가 도 전역에 조직되어 있었고 농민조합, 민주청년동맹 등이 조직된 지역도 있었다. 경북의 각 군에서는 이런 조직이 주축이 되어 항쟁을 이끌어나갔다. 군 인민위원회를 이끌었던 군 단위 지도자급 인사들은 항일운동을 했던 지식인, 지역 명망가, 토호, 지주층으로 마을이나 친족공동체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에서는 한학자, 소지식인, 지역 유지, 면장·구장 등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행동 세력으로서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주로 치안대나 민청, 또는 농민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던 청장년층으로 상인, 학생, 소작농민이나 하층민(남의집살이하던 머슴, 마을 소임) 중에서 항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이처럼 농촌 항쟁은 특정한 계층·계급의 틀을 넘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둘째, 항쟁의 조직적 기반을 살펴보면, 도시의 항쟁은 주로 이념적 조직이나 직업별 조직을 기반으로 일어났다. 이에 비해 농촌의 항쟁은 친족공동체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친족 관계의 일가주의적 동질성은 항쟁이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마을공동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마을 자치조직과 계급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머슴들의 하층민 조직도 항쟁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항쟁의 전개 형태를 보면, 농촌 항쟁의 전개 형태는 정당 조직이나 노동조합 조직 등 조직운동이 영향을 미쳤던 도시의 항쟁보다는 1862년 항쟁과 1894년 항쟁 등 19세기에 발생했던 전통적 농민 항쟁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영천의 경우, 1946년 10월항쟁의 주도 조직인 인민위원회의 행동 패턴은 조선 후기 농민 항쟁의 주도 조직인 '향회'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며, 항쟁의 선봉대가 되었던 상인 조직이나 하층민 노동조직의 행동 패턴은 19세기 농민 항쟁의 주도 조직인 '초군'(나무꾼)들의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즉 1946년의 농촌 항쟁은 지역공동체의 외부 세력에 의해 전파되었으나 그 속에는 불과 반세기 전 농민들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항쟁의 경험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농민 항쟁이 대중적이고 자주적으로 전개되는 토대가 되었던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 없이 고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했다. 물론 영천 항쟁의 이러한 특징을 모든 지역 농민 항쟁의 특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은 도시 지역의 항쟁과는 다른 농민 항쟁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5. 1946년 10월항쟁 후 대구·경북 지역 사회운동

1946년 10월항쟁 후 대구·경북 지역 사회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946년 9월 총파업의 주축이었던 노동운동은 1947년 3·22 총파업, 1948년 2·7총파업, 5·8총파업 등을 벌였으나,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조직력이 약해졌다. 주요 노조들은 계속 탄압을 받아 1948년 후반에는 소수의 비합법 세포조직만 남게 되었다.

그 대신 10월항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항쟁의 열기를 몸으로 겪었던 학생들의 대중운동은 성장했다. 학생들은 1947년 2월부터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운동을 벌였고 3월에는 노동자와 함께 3·22 총파업을 벌였다. 봄에는 민주학련 산하 지역연합 조직을 결성하여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요구 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민주학련은 공개적인 대중조직 연합체라기보다는 남로당의 외곽 단체로서 당에서 파견한 오르그가 지도하는 비공개 정치 대중조직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거의 모든 중학교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의 참여도가 높았다. 청년운동 부문에서는 대구민청이 1947년 5월 미군정의 명령에 따라 해산된 뒤 재조직된 민애청이 진보세력의 전위대로 활동했다. 민애청 구성원들은 나중에 합법적 활동이 완전히 봉쇄되고 남로당의 활동이 무장투쟁 중심으로 전환한 뒤에는 상당수가 입산하여 유격대 활동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농촌 지역의 농민운동도 강화되었다. 농민들은 10월항쟁 시기까지 주도적이었던 지역 인민위원회 대신, 지역 남로당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0월항쟁 참여 후 정치의식이 각성된 청년들은 마을에 야학을 설립하고 주민들을 조직하면서, 1948년 2·7투쟁과 5·10선거 반대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였다. 그리고 군경이 진압 작전을 강경하게 펼치자 일부는 거주지 인근의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를 조직했다. 경북 지역의 야산대는 1946년 10월항쟁 직후에 형성되어 1948년 2·7투쟁 직후 남로당 인민유격대로 조직되었다. 이처럼 미군정의 탄압 때문에 도시의 사회운동보다 농촌의 사회운동이 점차 더 강화되었다. 그리고 합법적 대중운동이 당국의 탄압으로 가로막히자 야산대가 결성되고 청년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무장투쟁이 발전했다.

한편 조선공산당 중앙조직은 1946년 9월에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3당 합당을 결의하여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을 결성했고, 대구의 지역 조직도 남로당으로 전환했다. 애초에 진보세력 안에 분파 갈등이 별로 없었던 대구에서는 3당 합당도 큰 갈등 없이 진행되었다. 남로당은 전위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결성된 정당으로, 결당 후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면서 당 조직을 대중정당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대중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미군정의 탄압과 당 활동 방식의 한계 때문에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통일전선 조직인 민전도 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대중조직의 실질적 지도부가 되지 못하고 행사 개최를 위한 한시적 투쟁기구 역할

에 머물렀다. 그리고 10월항쟁의 여파로 핵심 활동가층에 변화가 있었다. 10월항쟁 이전의 핵심 활동가들은 10월항쟁 후 구속되거나 피신하면서, 비교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원로 활동가와 해방 후 새롭게 성장한 세대들이 지역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남로당 결당 이후 지역의 진보운동이 중앙조직에 종속되며 전국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그 후의 지역 진보세력의 운동이 그전의 운동보다 더 급진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지방 보수세력의 조직도 강화되었다. 지방 보수세력은 농촌의 마을 단위까지 우익 청년단체를 만들어 준군사조직이자 사조직으로 육성했다. 서북청년단이 외부에서 들어와 폭력적인 반공주의가 퍼지기도 했으며, 경찰의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도 있었다. 우익 학생조직인 전학련(전국학생총연맹)이 결성되어 진보계열의 학생 연합조직인 민주학련과 대립했다. 이에 따라 1948년경에는 농촌의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우익 조직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지역민들은 좌우로 분열되어갔다.

1947년 이후 지역 진보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은 더 심해졌다. 1948년 5·10선거 전후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410건의 소요와 폭력 사건과 관련되어 좌파 인사 1,762명이 체포되었다. 농촌에는 민간인학살 사건도 일어나고 주민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었다. 탄압에 맞서 지역 진보세력은 1948년까지 계속 단독정부 저지 운동을 펼쳤으나, 결국 분단체제로 치닫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에 맞서면서 여순 항쟁과 '대구 6연대 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2·7투쟁 직후 조직된 남로당 유격대는 '대구 6연대 사건' 후 더 강화되었다. 여순 항쟁에 뒤이어 3차에 걸쳐 봉기를 일으킨 제6연대 군인 280여 명은 무기를 들고 입산해서 경북유격대에 합세했다. 이 시기에는 도시의 대중운동이 궤멸하고, 농촌과 산지의 유격대 활동이 주가 되었다. 남로당은 정부 수립 후 당국의 탄압으로 합법적 대중운동을 펼칠 수 없게 되자 무장투쟁을 주요한 투쟁전술로 삼았다. 무장투쟁이 당 활동의 중심이 됨에 따라 남로당 경북도당의 조직체계는 농촌의 유격대 활동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직장·공장 세포와 학교 단위의 비합법 세포를 조직하여 유격대의 무장투쟁을 보조하는 활동을 했다. 당국의 탄압으로 당 간부들이 계속 검거되면서

당 조직에는 해방 직후에 활동했던 간부들은 완전히 물러나고 젊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이 간부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 진보세력은 중앙조직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호림부대, 현지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하여 빨치산 토벌을 강화했다. 군경은 1949년 여름에서 겨울 사이에 빨치산의 9월 대공세에 맞서 합동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따라 경북 산악 지역에는 빨치산과 군경의 싸움이 잦았으며, 낮에는 군경이 지배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하는 이중권력이 형성되었다. 경북 농촌의 일부 지역에서는 1946년 10월항쟁 이후부터 군경의 토벌과 야산대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었으므로, 지역민들은 근 3년간 이중권력 치하에서 생활해야 했다.

유격대의 구성원은 '산사람'과 '들군'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산사람', 즉 '산화(山化)한 유격대'는 당의 명령에 따라 입산한 유격대원을 말한다. '들군'은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군을 말한다. '들군'들은 입산하지 않은 채 낮에는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유격대와 합류하여 활동하면서, '산화한 유격대'와 지역민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그들의 연령대는 10대, 20대 청년층이 많았고 계급적으로는 하층민이 많았다. 일부는 지주 출신인 빨치산 지도부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소작·고용관계로 맺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일반 주민들과도 혈연과 지연 등으로 얽혀 있었으며, 이것은 빨치산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기반이 되었다.

'들군'의 역할을 하던 청년들이 빨치산에게 협조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입산하기도 했으므로, 입산자의 하부 구성원과 마을 주민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유동적이었다. 그들은 유격대에서 작전을 벌일 때 동원되어 무장투쟁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가 작전을 마치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생활했으며, 이렇게 동원된 뒤에는 군경에게 한꺼번에 끌려가 집단학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격대와 지역민을 연결하여 유격대의 존립 기반이 되던 '들군'들이 자주적인 조직 단위가 되지 못하고 유격대의 동원 단위로만 활동하다가 집단학살되면서 대중운동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유격대도 점차 고립되었다.

또한 이중권력 지역의 마을 청년들은 빨치산과 군경 양쪽에 동원되는 생활을 했다. 들군의 형태

로 빨치산에게 동원되던 청년들은 군경이 토벌작전을 할 때는 민보단, 청년방위대 등의 형태로 동원되어 군경에게 길을 안내하고 교전이 있을 때 총알받이 역할을 했다. 그들은 좌우익 양쪽 집단에 이중적으로 말단 하부단위가 되어 양쪽 집단의 토대를 중복으로 형성했다. 그러므로 군경은 주민들을 수시로 모아놓고 누가 빨치산 협조자인지 서로 손가락질하여 지목하게 한 뒤, 공개총살을 목격시킴으로써 이러한 이중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1949년 하반기에 도시의 지하조직들은 당국의 집중적인 검거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농촌 산지의 유격대도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전개된 군경 토벌작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진보적 대중운동이 정부 수립 후 퇴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엄청난 물리적 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을 자주적 단위로 조직하지 못한 남로당과 유격대 무장투쟁의 활동 방식의 문제점도 있었다.

구술 자료를 통해 당시 활동했던 빨치산과 지방 좌익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주입된 반공 담론을 넘어서 내재하는 학살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읽을 수 있다. 그 트라우마는 분단·반공체제에서 '지식'으로 표상되는 '사상 / 이념'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이중권력 아래에서 양쪽에 동원되는 위치에서 강제성과 자발성이 혼합된 채 순응과 저항,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적 기억은 전쟁 후 한국 사회에 반공의 사회심리 구조를 형성하고 냉전 통치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나중에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화된 또 다른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6. 결론 : 1946년 10월항쟁과 80주년의 과제

1946년 10월항쟁은 한국사회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건국운동의 좌절에 대한 반발이 국가 형성의 과도기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해방 후 1년 동안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토지개혁

을 지연하고 건국운동 세력을 탄압했다. 이러한 정책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민중에게는 일제 식민지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과 같았고 사회적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것이었다. 10월항쟁에는 과거와 같은 식민지 상황으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민중의 반제 요구가 내재해 있다.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봉건적 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민의 반봉건 요구가 결합해 있다. 이러한 반제 반봉건의 요구는 주로 친일 관리와 경찰, 악덕 지주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또한, 1946년 10월항쟁은 각 지역에서 대부분 계층·계급이 연대하여 일어났다. 이러한 연대에는 해방 후 1년 동안 대중투쟁의 경험을 쌓아온 조직대중이 선도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1946년 10월항쟁은 우선 항쟁을 이끄는 전국적 지도부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쟁은 각 시·군 단위로 발생한 뒤 미군정의 막강한 물리력에 의해 단기간에 진압되었으며, 항쟁 단위가 전국적, 체계적 형태를 띠지 못했다. 지역 지도부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 대구 항쟁이 전개될 때 지역 차원에서도 노동자 총파업을 지도한 파업 지도부나 1946년 10월 2일 오전의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시위 지도부 외에는 대중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항쟁 지도부가 구성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지역 진보세력 지도부 인사로 구성된 조공·민전의 대책위원회는 미군정과의 협상창구나 사태수습 기구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10월 2일 오후에 대구 시내 곳곳에서 기층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부가 없었으며,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항쟁은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또한, 농촌에서는 19세기 전통적 항쟁의 경험이 항쟁 속에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농민 항쟁이 대중적이고 자주적으로 전개되는 토대가 되었으나, 동시에 농촌의 항쟁이 다른 지역과 유대 없이 고립적으로 진행되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했다.

학계 연구에는 10월항쟁이 조공의 좌 편향의 무분별한 투쟁에서 비롯되었고, 진보세력에 커다란 피해를 줘 그 뒤의 남한 사회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미군정의 좌익 탄압은 항쟁의 결과라기보다는 항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다. 1946년 10월항쟁 후부터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진행된 사회운동 양상을 보면, 항쟁 결과 사회운동 역량이 무조건 손실된 것만은 아니었다. 1946년 10월항쟁이 미군정의 막강한 물리력에 의해 진압된 뒤 미군정 및 보수세력과의 대

결이 전면화되면서 주요 핵심세력은 탄압당했지만, 항쟁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자각된 대중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이 더 성장한 곳도 있었다. 즉, 1946년 10월항쟁은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다른 의미에서 진보세력 조직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 운동의 중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핵심 활동가층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 진보운동이 중앙조직에 종속되며 전국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1946년 10월항쟁 이후의 사회운동은 1948년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으로 이어져 장기 항쟁으로 전화했고,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지역 진보세력은 계속 단독정부 저지 운동을 펼쳤으나 분단체제로 치닫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했다.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대중운동이 정부 수립 후 퇴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엄청난 물리적 폭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합법적 대중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비합법 무장투쟁으로 전환했던 남로당과 유격대 활동의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산지가 협소한 한국에서 유격대 활동이 대중운동으로 연결되려면 대중과 유격대의 연결 고리가 되었던 청년들 - '들군'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데 유격대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는 들군들이 자주적인 조직단위가 되지 못하고 입산한 유격대의 동원단위로 활동하다가 집단학살되면서 대중운동은 궤멸하고 유격대도 점차 고립되었다. 그러므로 1946년 10월항쟁은 한국전쟁 전 민간인 집단학살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살은 건국운동의 주축이었던 지역 진보세력의 배제와 절멸 과정, 특히 진보세력 말단에서 대중과의 접점에 있던 청년 활동가군의 말살 과정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민간인학살을 한국전쟁 시기에도 계속했다. 한국전쟁은 학살을 통한 통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8년간의 학살을 거쳐 중앙 국가기구는 지방권력과 마을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배제하여 신생 국가의 통치주도권을 획득하고 체제를 공고히 해나갔다.

1946년 10월항쟁은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형성되던 초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전후 냉전 통치성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46년 10월항쟁 이전의 지방 단위에는 애국세력과 친일세력의 구분만 있을 뿐, 좌익과 우익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항쟁 후 우익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말단 하부조직을 형성하고 지방권

력을 장악했다. 그 뒤 이승만 정권은 이를 토대로 국가권력을 하향적으로 이식했다. 그리고 학살에서 생존한 지역민들에게는 패배와 학살의 공포가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후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 = 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 구조를 형성해 냉전 통치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나중에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화된 또 다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친미반공 정권이 안정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2010년 3월,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보고서를 발표하고, 항쟁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민간인들이 적법절차 없이 학살된 사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1946년 10월항쟁과 관련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재를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방대한 문서자료와 증언자들의 진술조사 및 현장조사를 기초로 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항쟁 자체보다는 항쟁 이후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항쟁 자체의 실상, 배경, 영향 등을 상세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조사도 대구, 칠곡, 영천, 경주 지역의 일부만 조사한 상태에서 2010년 12월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중단되어버렸다. 현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앞으로 10월항쟁 직권조사 등 더 활발한 진상규명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유족들은 2009년 12월 4일 대구에서 '10월항쟁 유족회'를 결성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회 회원 중 일부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항쟁 유족회'는 2014년 12월 10일, 단체의 명칭을 '10월항쟁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유족회'로 변경한 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면서 정부가 과거사정리 활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6년 7월에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33-1번지에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했다.

향후 진상규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46년 10월항쟁의 조사범위를 공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1946년 10월항쟁은 해방정국 최대의 사건이며 동학농민운동, 3·1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난 항쟁이므로 전국적인 범위의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1946년 10월항쟁은 1946년 10월의 일회성 항쟁이 아니라 이후의 여러 항쟁 및 민간인학살과 연결된 사건이며, 국가 형성기 지역민들의 삶과 한국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므로 시간적으로 확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1946년 10월항쟁 이후 입산자의 활동이 활발했던 경북 일부 지역(영덕, 경주, 영천 등)에서는 1949년 군경의 합동토벌작전 피살자 수가 한국전쟁기 보도연맹사건 피살자 수보다 많거나 비슷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10월항쟁을 1946년의 일회성 항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949년까지를 '10월폭동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며, '10월폭동'을 한국전쟁보다 더 큰 전쟁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천경찰서 자료 등 국가기관 자료에도 한국전쟁기까지의 '처형자' 상당수를 '10·1폭동 참여 혐의로 처형'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1946년 10월항쟁을 '10·1사건'으로 제한하여 보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항쟁 이후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과 활동, 이에 대한 군경의 대응 등을 직권조사하여 항쟁을 좀 더 거시적·구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군정기 포고령 위반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포고령 위반 혐의 피해자들의 재심 승소 사례가 있으며, 현행 과거사정리법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뿐 아니라 전시 인권침해까지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조사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월항쟁 유족들의 연좌제·사찰관리 피해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항쟁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유족의 배·보상과 트라우마 치유 등 피해회복, 추념·유해발굴·역사교육·교육전시 공간 등 사회적 기억과 역사화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지속할 재단 등의 추진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월항쟁은 제주4·3항쟁, 여순항쟁과 더불어 해방기의 3대 항쟁으로 역사적 의미와 영향이 큰 사건인데, 다른 항쟁보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늦은 감이 있다. 이제 10월항쟁 80주년은 미완의 진상규명·피해회복·역

사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경북지방경찰청(2001), 『경북경찰발전사』.

경찰청과거사위(2006), 『46년 대구10·1사건 중간조사결과』.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8), 『한국전쟁사 제1권』.

김상숙(2011), 「1946년 10월항쟁의 지역적 전개양상: 영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30집.

(2011),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 사건: 경북 영천의 사례연구」, 『기억과 전망』, 2011년 겨울호(통권 25호).

——— (2014), 「1948~1949년 지역 내전과 마을 청년들의 경험 : 경북 영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1호.

(2016), 「1946년 10월항쟁과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

(2016), 「10월항쟁유족회와 과거청산운동」, 『NGO연구』 제11권 1호.

(2016), 『10월항쟁 :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단 영천시 지역조사팀(200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구술증언보고서』.

제4대 국회(1960),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정영진(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 정해구(1988),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 진실화해위원회(2009a),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 (2009b), 「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10a),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b),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Ⅰ』.

(2010c),『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Ⅲ』.

허종(2004),「1945~1946년 대구 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 운동과 '10월 인민항쟁',『대구사학』75집. (2005),「미군정기 후반 대구 지역 좌파세력의 조직과 국가건설 운동」,『대구사학』79집. 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1987),『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한국경찰사Ⅱ』.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1986),『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원문은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1).

주한미군,「The Quasi-Revolt of October 1946」,『주한미군사』, 1948, 돌베개 간행 영인본(1988).

HQ. 99th M.G. Gp. 1946/10/01~1946/10/05.

HQ. 6th Division, 1946, G-2 Summary of Kyongsang, Kyongsang Communist Uprising of October, 1946(1946/12/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1995),『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 · 여론조사보고서(1945,9-1948,6)』1권, 한림대학교 출판부.

〈언론 보도자료〉

대구문화방송, "대구 현대사 재조명 2부 1946년 10월, 항쟁의 도시", 2005/08/31.

오마이뉴스, 진실위 조사관 백서 준비모임(김상숙 집필),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⑧ 대구 10월항쟁] 경찰의 발포로 유혈사태로 번져", 2011/08/09.

이외 다수의 보도자료.

발제

2

10월항쟁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과제

김산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

10월항쟁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과제

김산영(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

❶ 10월사건을 넘어 10월항쟁으로

10월항쟁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제주4·3의 '정명(正名)'문제처럼 명칭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곧 10월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이다.

10월항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폭동과 소요, 사건, 항쟁 등 다양하게 불려왔으며 여전히 용어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후 10월은 항쟁으로써의 지위를 차츰 회복해 나가고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극심한 식량난과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 등이 원인이 되어 경찰과 군, 우익단체 등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이후 후속조치로 희생자에 대한 위령·추모사업의 지원, 역사 기록 수정, 군경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대구10월항쟁유족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구광역시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차원에서 2016년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결과 2020년 대구·경북지역 최대 민간인 집단 희생 장소 중 한 곳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령 사업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명예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조례에서 10월항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10월을 폭동, 더 나아가 가치중립적 용어인 사건을 넘어 항쟁으로 표현·인정하고 위령 및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10월항쟁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1·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현황과 성과, 한계 등을 정리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❷ 1·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현황 및 한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군정하에서 군경에 의해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살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미신청 희생자 등 100여 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의 실재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10월항쟁을 담당한 조사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조사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과 조사 인력 등 위원회 차원의 기초 체력과 경험의 부족 등 조사 역량의 문제로 몇 가지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신청 사건 위주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10월항쟁이 발생하게 된 다양한 층위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항쟁으로서의 성격 등 전모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구, 칠곡, 영천, 경주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된 조사로 전국단위에서 발생한 10월항쟁의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10월항쟁의 시간적 범위를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시간으로 확장하지 못하였다. 넷째, 가해의 연결고리와 구조화된 국가폭력의 형성과정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러 이유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진실규명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진실규명의 대상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 등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고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범한 점은 진실규명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과거사정리에 있어 진실규명은 크게 '기록'과 '진술'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한다. 두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진술'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시간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1·2기 진실화해위원회 간 1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은 사건 관련자들의 사망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의 한 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었다.

더 이상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진실을 밝혀낼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늘어난 신청 기간과 신청 사건 수 등으로 인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며 개별 피해자의 희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경북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일부 지역의 개별보고서에서 10월항쟁이 특정인의 희생 이유로 언급되는 정도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을 바라보는 내부의 상이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량의 조사 중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경찰기록에 기재된 희생자들의 활동 사항 등을 문제 삼아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조사 중지로 처리하였다. 특히, 영천경찰서에서 생산한 자료에 10월항쟁과 관련되어 살인, 방화 등으로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진술과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중지 처리하였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서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1·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향후 아래의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월이 항쟁으로서 규정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❸ 10월항쟁의 조사 방향과 향후 과제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과 자료 등에 대해 직권조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개별 희생 사건에 대한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전모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10월항쟁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대상이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10월항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군경토벌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과의 연결고리 등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제4대국회에서 생산한 '제4대국회양민학살사건지상조사보고서'(1960년)와 '6·25 처형자 명단' 등 군경이 생산한 관련 기록등에 대한 추가 직권조사와 자료 간 교차분석 등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0월항쟁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학계, 유족,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행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추모·기념사업 확대, 역사 교육, 유해 발굴 등 1·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권고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10월항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화된 국가폭력의 형성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10월항쟁은 이후 군경토벌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 국가는 제주4·3, 여순사건 등을

거치며 국가보안법 제정, 국민보도연맹 창설, 「군인신체구속잠정규정」[1]제정, 연좌제 시행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국가폭력을 재생산해왔다. 따라서 10월항쟁에 대한 규명은 국가폭력의 구조를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해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10월항쟁의 주요 가해기관은 경찰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서북청년회(단) 등 우익 청년들이 가해의 과정에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여러 기록을 통해 일부 확인된다. 하지만 10월항쟁 당시 경찰의 보조인력으로 10월항쟁 진압에 동원된 서북청년회(단)의 불법적인 행위는 지역 주민들의 기억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 있을 뿐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0월항쟁 이후 서북청년회(단)는 대구와 경상도지역에 남아 벼락부대, 호림부대, 보국대대 등 비정규부대의 형태로 국가를 대신해 좌익 및 빨치산 토벌에 투입되었고, 제주4·3의 진압과정에도 동원되었다. 또한 창군기 이들은 정규군에 편성되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주요 사건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10월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에 있어 서북청년회(단)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군인신체구속잠정규정」은 1949년 9월 26일 『관보』에 국방부의 훈령제1호로 공고되었다. 「군인신체구속잠정규정제정시행_훈령제1호」, 『관보』제184호, 1949.9.26., 5~6.

발제

3

10월 항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김창록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0월 항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김창록(경북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 10월 항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대구·칠곡·영천·경주-」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10, 64면)에 따르면,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임.
- 좁은 의미 : 1946년 10월 1일 대구를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경북지역으로 번지고, 12월 중순에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된 주민봉기에 대해 가해진 생명, 신체적 가해에 대한 저항
- 넓은 의미 :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 **진화위는 위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 의한 위령·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122면) 등을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로서 권고했음.**

■ **그럼에도 10월 항쟁으로부터 만으로 80년, 진화위 권고로부터도 16년이 지난 지금도 진**

정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생존 1세대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전모를 확인하고 합당한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

II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 진화위의 기존 성과와 한계

- 진화위는 2010년 3월 30일 대구·칠곡·영천·경주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민간인들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되었다고 결정했고, 진실규명대상자 5명과 조사 과정에서 희생사실이 확인된 55명 등 총 60명을 확인·추산했음.
- 그러나 위 결정은 제한된 신청과 지역, 남아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고, 진화위 스스로 실제 희생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항쟁과 장기간의 보복 과정 전체를 조사한 결과도 아님.
- 또한 진화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충분한 피해자 구제와 온전한 명예회복에는 이르지 못했음
-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화위 활동은 중요하지만, 개별 사건을 완결하는 상설 제도는 아님.
- 2026년 2월 5일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했음(22조).
- 또한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인권침해 정도가 중대한 사건 등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음(25조 3·4항).
- 이는 미신청 사건과 새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것은 분명하며, 가족의 침묵, 연좌제의 공포, 신청기간의 경과 때문에 1기·2기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다시 문이 열렸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짐.
- 다만 3기 진화위도 여러 과거사 사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일반위원회일 뿐이며, 10월

항쟁의 전국적 확산, 미군정과 경찰의 지휘체계, 지역별 보복, 수형·행방불명·희생의 연계 등을 하나의 사건군으로 조사하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뿐만 아니라 10월 항쟁의 경우 경찰·검찰·법원·군·교정기관·지방행정기관의 문서, 당시 신문과 수형자료, 매장지 자료, 유족의 구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 국외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약

-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조례는 진화위나 법원이 인정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위령제, 자료의 수집·간행, 평화·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조부터 5조까지).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는 관할 구역이 특정 시·도에만 한정되어 있어, 경북을 넘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10월 항쟁의 전체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비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전국 단위의 유해 발굴, 실질적인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배·보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개별 소송의 한계

-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의 구제를 넓혀 왔지만,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청구하고 입증해야 하는 개별 절차임.
- 유족은 수십 년 전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해기관의 행위, 친족·상속관계, 손해 등을 다시 증명해야 함. 같은 사건의 피해라도 신청 여부, 남은 자료, 소송 제기 시점과 상속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 과거사정리 기본법 61조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지만, 소송비용, 판결까지의 시간, 피해자별 격차까지 없애지는 못함.

■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과의 형평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전담위원회, 희생자·유족 결정,

보상, 특별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유해발굴과 추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전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진상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특별재심, 의료·생활지원, 위령·자료관·평화인권교육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각 사건의 배경과 규모는 서로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같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지만, 광복 이후 국가형성기의 집단적 인권침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해회복의 핵심 수단이 입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제주4·3과 여순사건보다 앞선 1946년에 일어났고 이후의 국가폭력의 전개에도 연결되어 있는 10월 항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과거사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될 것임.

III 특별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1. 법률의 목적과 범위

■ 법률의 목적에는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보상, 추모와 교육, 재발방지 및 국민통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되어 같은 해 말까지 대구·경북 및 남한 각지로 확산된 항의와 저항, 그 진압 및 이를 직접적인 이유로 정부 수립 전후와 한국전쟁 전후까지 이어진 생명·신체 침해, 재판 절차 없는 살해, 불법재판, 그 이후의 2차 가해'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후속 피해의 경우 10월 항쟁과의 직접 관련성을 위원회가 자료에 따라 판단하게 하여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전담위원회와 실효적인 조사권

■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두되, 제3기 진화위와 조사기록·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망됨.**

-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결정, 배·보상 심의, 명예회복 조치, 유해발굴과 추모사업의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는 신청 접수, 현지조사, 사실 확인, 유족 지원을 담당하도록 함.
- 1기·2기·3기 진화위의 결정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새로운 자료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반복 심사를 줄여야 할 것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료제출·열람·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폐기·은닉을 막아야 할 것임.
- 신청이 없어도 집단희생지, 수형인명부, 매장기록 등 객관적 단서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오랜 시간의 경과와 국가의 기록 부실을 고려하여 증명기준도 현실화해야 할 것임. 공식 명부, 복수의 일치하는 구술, 동시대 자료, 같은 시기·장소의 집단희생 사실이 결합될 때에는 상당한 개연성에 따라 인정하고, 반대자료가 있으면 국가가 이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음.

3. 명예회복과 사법적 회복

■ **특별법은 국가의 공식 사과와 희생자 결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됨.**

- 미군정 재판, 군사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10월 항쟁 관련 불법 수사·구금·재판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검사의 직권재심 청구와 국선변호 지원도 함께 둘 필요가 있음.
- 사망·행방불명 사실이나 신분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기관이 보유한 전과·수형·사찰기록에는 위원회의 결정과 재심 결과를 부기하거나 정정하

도록 하여, 잘못된 기록이 후대까지 재생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4. 배상·보상과 생활지원

■ **배·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회복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불법구금 등 피해 유형과 기간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미 국가배상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손해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하되, 중복가능성만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임.
- 고령의 생존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치유, 의료지원, 생활지원, 장례지원과 신청 조력을 제공하고, 결정기한·이의신청·불복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5. 유해발굴, 추모, 기록과 교육

■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은 가장 늦출 수 없는 과제임.**

- 매장 추정지를 조사·보전하고, 발굴·감식·유전자검사·유족 대조·봉환에 이르는 국가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임.
-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긴급보전,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10월 항쟁의 기억을 일회성 위령행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됨.**

- 국가추념일 또는 국가 주관 추념식, 사료관·기념관·평화공원, 자료의 디지털 보존과 공개, 학교와 공무원 대상 평화·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추모사업의 내용은 유족과 지역사회, 연구자, 인권전문가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과 다양한 경험을 공개하는 원칙을 두어야 할 것임.

6. 미국 관련 자료와 책임의 조사

■ **1946년 당시 남한의 통치주체가 미군정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 관련 조사도 특별법의 필수 요소임.**

- 진화위는 경찰의 불법적 민간인 살해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미군정도 경찰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앞의 조사보고서, 121면).
- 대한민국의 법률이 미국 정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 자료의 수집·공개 요청, 공동조사와 외교적 협의,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을 것임.

7. 결정의 이행, 참여와 법률 간 조정

■ **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한 권고에 머물지 않도록 이행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임.**

-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행계획과 결과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무총리는 해마다 종합 이행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청인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사와 배·보상 결정기한을 두고, 생존피해자의 의료·생활지원과 위급한 유족의 장례·유해봉환 비용은 본결정 전에도 잠정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위원회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참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위원 구성에는 법률·역사·인권·의학·기록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유족 및 피해지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인의 진술권과 자료열람권, 결정 이유의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할 것임.

■ **다른 과거사 법률과의 관계는 '중복배제'보다 '중복조정'의 원칙으로 정해야 할 것임.**

- 진화위나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은 존중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손해에 관하여 지급된 금액만 정산해야 할 것임.
- 장차 통합적인 과거사 배·보상법이 제정되면 공통 급부기준은 그 법률과 조정하되, 10월 항쟁의 전담조사, 특별재심, 미국 자료, 유해발굴과 추모·교육에 관한 고유한 장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두어야 할 것임.

Ⅳ 맺음말

■ **대구 10월항쟁은 끝난 사안은 아님.**

- 희생자의 이름과 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유해가 돌아오지 못했으며, 잘못된 판결과 기록이 남아 있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이 완결되지 않았음.

■ **현행 제도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음.**

- 진화위는 조사와 권고의 일반 틀이고, 대구시 조례는 지역의 추모사업을 지원하며, 법원은 개별 청구를 판단함. 어느 하나도 전국적 사건의 전모를 전담하여 조사하고 희생자 결정부터 재심, 배·보상, 유해발굴, 기록·교육까지 하나의 절차로 수행할 수 없음.
- 2026년 개정 과거사정리 기본법 50조가 배상·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후속 입법을 스스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10월 항쟁 특별법의 제정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이며 대한민국이 법치와 인권의 국가임을 과거에 대해서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임.**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

토론

[10월항쟁 80주년 국회토론회] **10월항쟁 80주년의 의미와 과제**